

보험범죄의 인식과 예방에 관한 연구*

- 일반 억제이론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gnition and Prevention of Insurance Crime)

강문우** · 김명규***
Moonwoo, Kang Myungkyu, Kim

〈국문초록〉

보험은 인간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제도로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4년 말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이르는 보험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자에게는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되는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계약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보험범죄와 관련된 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없이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로서 보험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원인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보험범죄의 인식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공식적 제재인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

* 본 논문은 2016년 1월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명문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투고일: 2015. 12. 22. 심사일: 2016. 01. 08. 게재확정일: 2016. 02. 18.

보다는 비공식적 제재인 수치심과 애착손실과 같은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직업, 거주지, 월 평균소득, 연령, 혼인여부 등도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보험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보고, 향후 더욱더 다양한 원인론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 국문 주제어 : 보험사기, 보험범죄, 보험범죄예방, 보험범죄실태, 보험범죄억제

I. 서론

현대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사고와 같은 위협적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해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보험제도는 급성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4년 말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이르는 보험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은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한 금액을 출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실제 사건·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 급부를 제공하여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자에게는 매력적인 범행대상이 되는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보험계약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보험 범죄 유형에 따라 일반인도 학습에 따른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범죄는 가시적으로 피해자가 없어 마치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데 결과론적으로 대부분은 수사 강화, 관련 법령 검토,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형식적 차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보험범죄도 범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유형의 범죄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였을 경우 보험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는 그나마 소수 존재하나 보험범죄의 원인에 관한 개인적 특성을 검증한 실증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로서 보험범죄 감소를 위한 원인론적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인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보험범죄, 보험사기,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보험범죄를 접근하는 방법론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관련된 용어가 혼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용어를 파악하여 일반적 예방효과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보험범죄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특히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하여 추후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책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 특성에 따른 보험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즉 보험범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검증함이 기존 대책의 유용성 또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양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특성과 보험범죄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 태양과 범죄학 이론 중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 가능성을 분석하여 보험범죄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보험

1) 개념

보험(保險)이란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한 금액을 출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실제 사건·사고 등 재해가 발행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 급부를 제공하여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¹⁾ 한편, 사기(詐欺)란 법률용어로서 우리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1) 황정봉(2010), “보험학원론”, 대왕사, p.30.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²⁾ 이와 같이 보험과 사기의 개념을 혼용하여 보험사기라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와 계약관계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망적 행위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등의 기망적 행위 내지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위법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상의 사기죄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성립하여야 한다.³⁾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보험 사기와 보험 범죄라는 용어에 대해 인식의 효과를 위해 용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2) 특성

(1) 보험범죄 피해의 직접성과 광범위성

보험범죄를 위해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가정·사회에 인간성

- 2)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처벌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있다. 한편, 보험범죄 관련 법규로서 보험업법 제197조에서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보험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공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1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1항 및 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 116조 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연금법 제128조 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공보험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휴가급여 등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 3) 장인권(2010), “보험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상실, 도덕성 파괴 등이라는 직접적 피해가 유발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범죄로 인한 손해를 다른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분적 몫으로서 부담 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특성은 광범위한 범익침해로 이어진다.

(2) 고도의 지능성 및 입증 곤란성

보험범죄자들이 완전범죄를 위해 형식적 요건에 부합되는 고도의 지능성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금 수령에 충족되기 적합한 요건 중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구분의 어려움과 공범 등 제3자가 개입되어 사건·사고 위장 내지 범인을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우 알리바이 조작 등으로 인해 입증의 곤란성도 존재한다.

(3) 범죄의식 결여

범죄의식 결여는 보험범죄자와 일반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범죄자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였고 단순히 자신의 보험범죄로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중화이론적 해석으로서 범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⁴⁾

(4) 보험범죄자의 연소화 및 다양화

보험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주로 40대, 30대, 50대 분포로 이어지는데, 주목할 것은 연소화 현상이다. 이는 일반범죄 발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군을 보았을 때 일반인과 전문가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등 전문가의 보험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보험범죄의 조직화

보험범죄의 경우 발각 위험으로 개인 내지 2인의 공범 등 최소한의 인력이 동원되어 보험범죄를 구성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조직폭력단 및 전문가와

4) 금융감독원, 2012. 3. 12일 보도자료.

의 결탁 등으로 보험범죄의 조직화를 특성이라 할 수 있다.⁵⁾⁶⁾

3) 실태⁷⁾

<표 2-1>은 2015년 상반기 보험범죄 적발실적이다.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105억 원, 보험사기 혐의자는 0.6% 증가한 40,906명으로 나타났다.

<표 2-1>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13년 상반기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		증감률
				적발액	구성비	
적발 금액	생명보험	33,308	36,500	45,429	14.6	24.5
	손해보험	224,618	250,354	265,033	85.4	5.9
	자동차	143,594	149,382	146,681	47.2	△1.8
	장기손보	68,202	82,029	108,957	35.1	32.8
	계	257,926	286,854	310,462	100.0	8.2
적발 인원	생명보험	1,870	2,570	2,933	7.2	14.1
	손해보험	40,083	38,144	38,027	92.8	△0.3
	자동차	32,254	30,306	28,478	69.5	△6.0
	장기손보	7,492	7,107	9,160	22.4	28.9
	계	41,953	40,714	40,960	100.0	0.6

5) 장인권(2010), 전계논문, p.32.

6)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는 1998년에 적발된 '도봉강북지역 보험사기 사건'이다. 주범인 피고인 A, B는 각각 현직 보험회사 대리점 팀장급 설계사와 병원 사무장 출신의 보험브로커로써 '최부장파,' '점용이파,' '제일기획파,' '대관이파' 등의 조직폭력단파 연계하여 강북 일대를 무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의 조직적인 보험범죄사기단은 먼저 범죄에 가담할 보험설계사를 포섭하고,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정해 피해자에게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하여 10건 이상씩 보장성 보험에 집중가입하고 소위 '사연 만들기'라는 위장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과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안병재,(2001).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손해보험」, 2000년 10월호, 손해보험협회. 26면 ; 최인섭·이천현·오경식·안경옥·이경렬,(2002),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540 ~ 541.

7) 보험범죄 발생현황을 파악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 이유는 먼저 보험범죄 피해회사들이 보험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와 암수범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상에 보험범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 분석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험범죄를 일반범죄에 적용하여 통계분석이 어려운 점은 일반인이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기 힘든 상황이다.

출처: <http://www.fss.or.kr>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표 2-2>와 같이 손해보험의 경우 약 2,650억(85.4%), 생명보험 약 454억(14.6%)이었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은 약 1,466억(47.2%), 장기보험이 약 1,089억(47.2%)이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이 약 445억(14.4%)이었다.

<표 2-2> 보험 종류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p)

구 분	'13년 상반기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생 명 보 험	33,308	12.9	36,500	12.7	45,429	14.6	24.5	1.9
교육보험	4	0.0	44	0.0	25	0.0	△42.8	△0.0
연금보험	460	0.2	638	0.2	820	0.3	28.5	0.0
보장성보험	32,844	12.7	35,818	12.5	44,584	14.4	24.5	1.9
손 해 보 험	224,618	87.1	250,354	87.3	265,033	85.4	5.9	△1.9
자동차	143,594	55.7	149,382	52.1	146,681	47.2	△1.8	△4.8
장기	68,202	26.4	82,029	28.6	108,957	35.1	32.8	6.5
화재	2613	1.0	3,614	1.3	5,543	1.8	53.4	0.5
해상	20	0.0	581	0.2	-	-	△100.0	△0.2
기타(특종)	10,189	4.0	14,748	5.1	3,853	1.2	△73.9	△3.9
전 체	257,926	100.0	286,854	100.0	310,462	100.0	8.2	-

출처: <http://www.fss.or.kr>

2. 억제이론

1) 개념

억제이론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근간으로 범죄예방을 한다는 점에서 고전주의 범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고전주의 범죄관은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은 일탈할 잠재성을 가진 존재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습적인 해결책이나 범죄적 해결책을 선택할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통상적으로 범죄적 해결책은 큰 보상에 비하여 덜 힘들기 때문에 관습적인 해결책보다 더 매력적이다.

셋째, 범죄적 해결책의 선택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반응의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넷째, 사회의 반응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할수록 범죄행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다섯째,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범죄가 매력적이지 못한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처벌이다.⁸⁾

억제이론은 인간은 합리적 계산을 통하여 행동을 하는데, 이면에는 쾌락과 처벌의 고통의 비교에 따라 범죄 가능성을 타진하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 여부를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⁹⁾ 여기서 고통 등 처벌은 공식기관의 처벌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통제요소로서 구체적으로 처벌이 즉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빠짐없이 확실히 이루어지며, 좀 더 엄중히 집행될 때 범죄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 범죄는 발생하게 되므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만약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하게 가해지는 형벌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억제이론의 논리가 보편타당하면 보험범죄에 대한 공식적 처벌 역시 보험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¹¹⁾

2) 구성요소

범죄와 처벌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신속성 그리고 확실

8) Larry J. S.(1986). Criminology. St. Paul, MN: Weast Publishing co.

9) Zimring, F. E., Hawkins, G. J., & Vorenberg, J. (1973), Deterrence: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Tittle, C. R.(1969), "Crime rates and legal sanctions", Social problems, 16(4), pp.409-423.

11) Silberman, M. (1976). "Toward a theory of criminal deterr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성이 구성요소로서 동시에 고려되어야한다.¹²⁾

처벌의 엄격성은 범죄 발생 수준과 역비례 관계에 있다. 형사제재의 엄격성만이 범죄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범죄에 대한 체포가능성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범죄 억제적 조치들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처벌의 신속성이다. 범행시점으로부터 처벌이 부과되는 기간에 따라 처벌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범행에 따른 처벌이 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처벌이 보다 유용하고 정당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처벌의 확실성이다. 처벌의 대상 등 그 성격에 따라 확실성이 다르다면 법률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 일반 시민들의 처벌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처벌의 확실성이 필요하다. 고전주의의 처벌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처벌의 확실성이다.

그러나 기존의 억제이론은 단순히 처벌에만 주안점을 두어 연구의 한계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범죄사회학적 이론에서 주장되는 변인을 접목하며 확대된 억제이론의 내용으로 발전한다. 그 중 처벌의 인지는 기본으로 애착·관여·신념·참여 등 개인과 주변과의 관계 설정에서 오는 변인이 소개된다. 기존의 억제이론의 요소인 공식적 기관의 처벌에 대한 신속성·엄격성·확실성 이외에 개인의 생활을 하며 연관된 가족·직장·주변 관계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여러 손실을 우려하여 범죄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가정이다.¹³⁾

인간은 공식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며 발생 가능한 손실까지 인식하여 합리적 계산하에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통합 및 발전과정으로서의 확대된 억제이론을 주장하게 된다.¹⁴⁾ 또한 Williams & Hawkins(1986)는 위법행위에 대한 수치심과 당혹감, 관계손실에 대한 두려움 등의 비공식적 제재가

12) Meier, R. F., & Johnson, W. T. (1977). "Deterrence as social control: The legal and extralegal production of conform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294-295.

13) Cochran, J. K., Chamlin, M. B., Wood, P. B., & Sellers, C. S. (1999). Shame, embarrassment, and formal sanction threats: Extending the deterrence/rational choice model to academic dishonesty. *Sociological Inquiry*, pp.91-92.

14) Grasmick, H. G., & Bursik Jr, R. J.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pp.839-840.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수치심이란 위법 행위에 대한 자기비난을 의미하는데,¹⁵⁾ 합법성에 대한 의지, 도덕과 질서유지에 대한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수치심은 잠재적으로 자기에게 부과되는 형사사법기관의 처벌 보다는 내면적 징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마다 처벌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비난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¹⁶⁾ 당혹감은 사회적 비난으로서 직장 동료나 주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위법행위에 대해 동료나 주변인은 당사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판단까지 단절 가능한 상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 측면에서 수치심과 당혹감은 유사함을 보이는데 그 대상이 개인과 사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⁷⁾

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의 구성요소인 처벌의 신속성·엄격성·확실성이 일반 개인에게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공식적 처벌이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확대된 억제이론으로서 공식 및 비공식적 처벌로 인한 개인의 다양한 손실관계에 대해 보험범죄예방으로서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처벌에서 오는 억제이론의 범죄예방효과는 공통적이지만, 직·간접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론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처벌이 보험범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들은 처벌위주의 보험범죄대책이 실제로 보험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 등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3. 선행연구

보험범죄 관련 선행연구로서 박장남(2006)은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보험가입자와 경제범죄 수사담당관을 대상으로 보험범죄의 인식 및 의

15) Grasmick, H. G., Blackwell, B. S., & Bursik Jr, R. J. (1993). Changes in the sex patterning of perceived threats of sanctions. *Law & Soc'y Rev.* p.684.

16) Grasmick, H. G., & Bursik Jr, R. J. (1990). *op. cit.* p.840.

17) Grasmick, H. G., & Bursik Jr, R. J. (1990). *op. cit.* pp.840-841.

식수준, 유발가능성, 방지 대책 및 처벌 수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험가입자 및 보상담당자의 경우 연성사기에 대해 범죄의식과 적발가능성에 대해 관용적 태도 및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보험범죄에 대한 죄의식 및 처벌의 경미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인권(2010)은 보험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보험범죄의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최근까지의 보험범죄자에 대한 6,670명의 형사판례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범죄자 6,625명의 보험범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보험범죄자가 높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억제이론 관련 선행연구로는 억제이론의 공식적 제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연성진·최인섭·정진수·박미숙·신의기·김은경(2003)은 한국의 형사정책 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에서 걱정범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벌의 억제효과는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전우홍(1985)은 성인 남성 432명을 대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위법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도 관련이 있지만 비공식적 제재가 예방적 차원에서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 제재보다 비공식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⁹⁾ 전영실(2009)은 음주운전의 억제방안 연구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제재 요소인 자기통제력, 수치심, 당황감 모두 높은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처벌의 신속성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으로 신속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⁰⁾

비공식적 제재와 관련하여 Nagin & Pogarsky(2001)는 공식적 제재 및 비공식적 제재에 있어 기본적 질서의식, 손실 등 비공식적 제재가 더욱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²¹⁾ 이러한 결과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와 범죄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8) 연성진·최인섭·정진수·박미숙·신의기·김은경(2003), “한국의 형사정책-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 형사정책연구, p.32.

19) 전우홍(1985), “지각된 억제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 3(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p.88.

20) 전영실(2009),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pp.274-275.

21) Nagin, D. S., & Pogarsky, G. (2001). Integrating celerity, impulsivity, and extralegal sanction threats into a model of gener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Criminology*, 39(4), p.865.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범죄 가능성 및 유발 요인 등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가 있지만 실제 CASE 대입하여 범죄 원인론적 방법은 미흡하며, 대책의 경우에도 이론적 배경에 충실한 대안보다는 사회제도적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형식적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억제이론의 처벌의 확실성·신속성·엄격성은 대상의 차이 내지는 범죄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보험범죄에 대한 다양한 범죄이론의 검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 연구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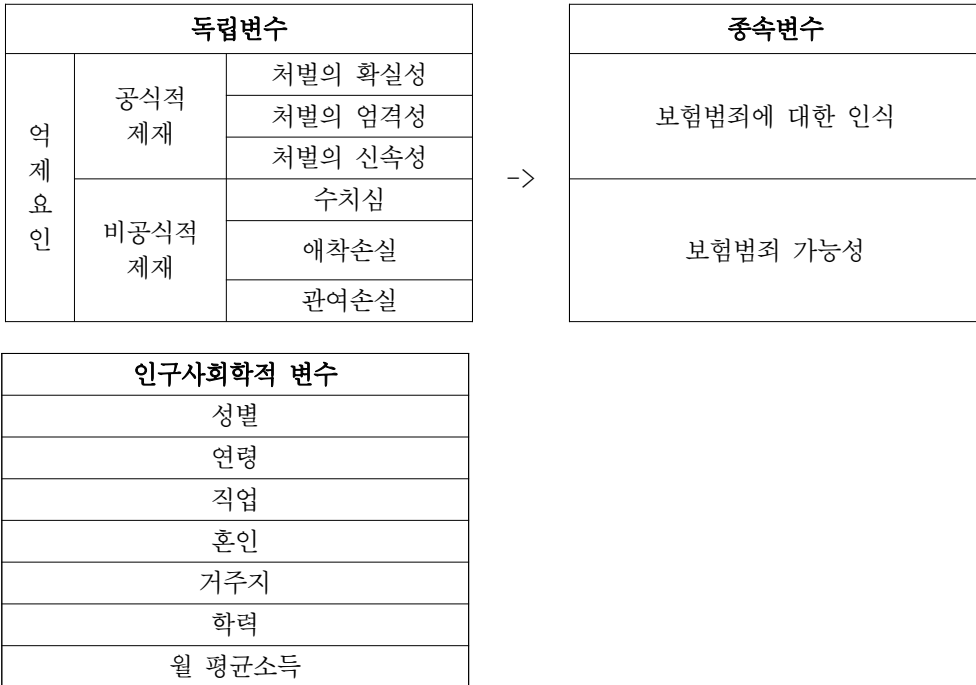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억제이론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제재와 비공식적인 제재가 일반인의 보험범죄라는 일탈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일탈유발요인으로 지적된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특성이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었을 억제요인의 영향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식적 처벌에 대한 인지와 그 처벌로 인해 야기될 각종 손실에 대한 인지들이 일반인의 일탈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억제이론에 따르면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은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보험범죄 가능성에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확대된 억제이론에 근거하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야기될 수치심과 당혹감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재들 역시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표 3-1>과 같다.

<표 3-1> 가설

가설 I	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벌이 확실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2. 처벌이 엄격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3. 처벌이 신속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II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치심을 느낄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2. 애착손실을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3. 관여손실을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III	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벌이 확실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2. 처벌이 엄격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3. 처벌이 신속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IV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치심을 느낄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2. 애착손실을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3. 관여손실을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의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을 2개 이상의 상호배타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전국을 대상으로 층화하여 추출한 후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였다. 이때 각 층의 크기를 고려한 비례층화방법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 시 각 층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인의 보험범죄 인식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1.0을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과 ‘보험범죄 가능성’ 이다.

(1)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현재 일반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보험범죄, 보험사기,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보험범죄를 접근하는 방법론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관련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용어를 파악하여 일반적 예방효과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보험범죄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을 <표3-2>와 같이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보험사기는 더욱 많을 것이다’, ‘보험사기는 심각하다’, ‘앞으로 보험사기는 증가할 것이다’, ‘보험사기 감소를 위해 보험범죄 표현이 적절하다’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평가요소		세부설문항목
보험 범죄에 대한 인식	보험범죄인식1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보험사기는 더욱 많을 것이다
	보험범죄인식2	보험사기는 심각하다
	보험범죄인식3	앞으로 보험사기는 증가 할 것이다.
	보험범죄인식4	보험사기 감소를 위해 보험범죄 표현이 적절하다

(2) 보험범죄 가능성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Klockars등(2000)과 윤일홍(2009), Pogarsky와 Piquero(2004)의 연구를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억제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 3-3>과 같이 시나리오 방법을 이용하였다. 보험범죄 가능성은 총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

길동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1점에서부터 ‘매우 부적절하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보험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보험범죄 가능성 측정 문항

평가요소	세부설문항목
보험범죄 가능성	홍길동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	사례: 홍길동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그런데 홍길동은 얼마 전 가입한 보험이 생각나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서류에 2주일 이상 입원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하고 있다.

2) 독립변수

(1) 공식적 제재

억제이론의 기본명제를 보험범죄에 적용한다면, 적발과 처벌과 같은 공식적 제재가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하게 가해질수록 일반인의 보험범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신속성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앞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표 3-4>와 같이 각각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처벌의 확실성은 ‘홍길동의 행동은 사법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로 측정하였으며, 처벌의 엄격성은 ‘사법당국은 홍길동의 행동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다’로 구성되었다. 처벌의 신속성은 ‘홍길동은 사법당국에 매우 신속하게 적발될 것이다’로 구성되었다.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의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 공식적 제재 측정 문항

평가요소		세부설문항목
공식적 제재	처벌의 확실성	홍길동의 행동은 사법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처벌의 신속성	홍길동은 사법당국에 매우 신속하게 적발될 것이다
	처벌의 엄격성	사법당국은 홍길동의 행동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다

(2) 비공식적 제재

개인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로서 수치심, 애착손실, 관여손실 3가지로 구분하였다. 수치심은 법을 위반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기자신에 대한 비난의 감정, 즉 자책감을 말한다. 수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Cochran 등(1999)과 Grasmick와 Bursik(199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수치심은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후회할 것이다’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친밀한 관계가 손상되거나 자신의 사회적 명예나 지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손실들을 인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Williams와 Hawkins(1986)의 연구에 기초하여 애착손실, 관여손실로 구분하여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애착손실은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가족들이 실망할 것이다’,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주변사람들이 나를 꺼려 할 것이다’로 구성되었다.

관여손실은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가정생활에서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직장생활에서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로 구성되었다. 비공식적 제재인 수치심, 애착손실, 관여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타 변수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제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문의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비공식적 제재 측정 문항

평가요소	세부설문항목	
비공식적 제재	수치심1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수치심2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수치심3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후회할 것이다
	애착손실1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가족들이 실망할 것이다
	애착손실2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주변사람들이 나를 꺼려 할 것이다
	관여손실1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가정생활에서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관여손실2	내가 홍길동과 같은 행동으로 처벌 받는다면 직장생활에서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4.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표3-6>은 이 연구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이다.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험범죄인식4의 ‘보험사기 감소를 위해 보험범죄 표현이 적절하다’의 문항은 요인분석에서 연구자가 조작화 하였던 요인들에 묶이지 못하였기에 변수를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 하였다. 그 결과 보험범죄인식은 3개의 요인분석 되었다.

공식적 제재에 대한 문항은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엄격성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문항은 수치심, 애착손실, 관여손실로 구분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식적 제재(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비공식적 제재(애착손실, 관여손실, 수치심)와 종속변수인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808로 기준치 0.6의 이상이므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 제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800, 비공식적 제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920으로 기준치 0.6의 이상이므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설문 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요인분석 및 신뢰도

	보험 범죄 인식	공식적 제재			비공식적 제재			Alpha if item Deledeed	Cronbah α	공통성
보험범죄 인식1	.859							.728		.859
보험범죄 인식2	.863							.716	.808	.863
보험범죄 인식3	.832							.766		.832
처벌의 확실성		.929						.745		1

	보험 범죄 인식	공식적 제재			비공식적 제재			Alpha if item Deledeed	Cronbah α	공통성
처벌의 신속성			.927					.698	.008	1
처벌의 엄격성				.914				.738		1
수치심1					.679			.907		.79
수치심2					.858			.905		.831
수치심3					.878			.912	.92	.872
관여 손실1						.875		.909		.872
관여 손실2						.85		.901		.859
애착 손실1							.818	.905		.914
애착 손실2							.635	.912		.831
고유값	2.175	2.145	.463	.392	4.732	.867	.422			
분산 설명 (%)	72.486	71.511	15.417	13.071	67.594	12.38	6.026			

<표 3-7> 상관관계 분석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	애착	관여	수치심	가능성
확실성	1						
엄격성	.586**	1					
신속성	.538**	.594**	1				
애착	.249**	.274**	.164**	1			
관여	.202**	.252**	.168**	.724**	1		
수치심	.213**	.216**	.099*	.744**	.617**	1	
가능성	.199**	.121*	.130**	.433**	.332**	.475**	1

*상관계수는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IV. 실증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에 제시하였다. 연령의 경우에는 30대 3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5.1%, 20대 23.1%, 50대 11.8%, 60대 이상 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54.7%, 여성은 45.3%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의 경우에는 기혼이 40.0%, 미혼이 60.0%로 미혼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거주지는 서울 13.3%, 인천·경기 10.4%, 강원 2.7%, 충남(대전시, 세종시 포함) 28.2%, 충북 3.6%, 대구·경북 16.9%, 부산·경남 3.1%, 전북 10.4%, 광주·전남 11.3%로 충남, 대구·경북, 서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54.9%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26.2%, 전문대학교 졸업 15.6%,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에는 전문사무직 31.8%, 서비스직 13.8%, 자영업 11.1%, 기술직 6.2%, 생산직 3.8%, 농어업 0.7%, 기타(주부, 군인 등) 32.7%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28.0%, 400만원

이상 27.3%, 200 - 300만원 이하 24.7%, 300 - 400만원 이하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인구사회학적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대	104	23.1	거주지	서울	60	13.3
	30대	162	36		인천·경기	47	10.4
	40대	113	25.1		강원	12	2.7
	50대	53	11.8		충남(대전·세종)	127	28.2
성별	60대 이상	18	4		충북	16	3.6
	남성	246	54.7		경북(대구)	76	16.9
혼인 여부	여성	204	45.3		경남(부산)	14	3.1
	미혼	180	40		전북	47	10.4
	기혼	270	60		전남(광주)	51	11.3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직업	전문 사무직	143	31.8	학력	학생	15	3.3
	서비스직	62	13.8		고졸	118	26.2
	자영업	50	11.1		대재	70	15.6
	기술직	28	6.2		대졸	247	54.9
	농어업	3	0.7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126	28
	생산직	17	3.8		200 - 300만원	111	24.7
	기타	147	32.7		300 - 400만원	90	20
				400만원이상	123	27.3	

2. 연구결과의 분석

1) 회귀분석 결과

(1) 보험범죄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보험범죄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검정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델1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종속변수인 보험범죄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6.246로 나타났다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25$ 로 12.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보험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충청도($\beta=.366$, $p<.001$), 전라도($\beta=.408$, $p<.001$), 월소득($\beta=.117$,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억제요인이 보험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4.710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2=.148$ 로 14.8%의 설명력을 나타내, 모델1의 설명력 보다 약 2% 정도 높게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1.890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 제재 요소 중 처벌의 확실성($\beta=-.040$), 처벌의 엄격성($\beta=-.040$), 처벌의 신속성($\beta=-.003$)이며, 비공식적 제재 요소 중 애착 손실($\beta=.033$), 관여손실($\beta=.057$), 수치심($\beta=.05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2> 보험범죄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B	β	B	β
상수	3.407	-	3.194	-
확실성			-.040	-.051
엄격성			-.040	-.048
신속성			-.003	-.003
애착손실			.033	.041
관여손실			.057	.075
수치심			.055	.067
Durbin-Watson	1.890			
R2	.125		.148	
F값	6.246***		4.710***	

*p<.05, **p<.01, *** p<.001, two-tailed

(2)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검정결과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델1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종속변수인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값이 P=.01에서 2.659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057로 5.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보험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연령(β =.241, p<.001), 혼인(β =.378,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억제요인이 보험범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0.540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²=.280로 28.0%의 설명력을 나타내, 모델1의 설명력 보다 약 23% 정도 높게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1.73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 제재 요소 중 처벌의 확실성(β =-.135), 처벌의 엄격성(β =-.131), 처벌의 신속성(β =.1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비공식적 제재 요소 중 관여손실(β =-.04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애착손실($\beta=232, p<.05$), 수치심($\beta=.501, p<.001$)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B	β	B	β
상수	2.039	-	-.347	-
확실성			-.135	.099
엄격성			-.131	-.091
신속성			.105	.072
애착손실			.232*	.168
관여손실			-.043	-.032
수치심			.501***	.349
Durbin-Watson	1.731			
R2	.057		.280	
F값	2.659**		10.540***	

* $p<.05$, ** $p<.01$, *** $p<.001$, two-tailed

2) 가설의 검증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모두 탈락되었다. 하위 가설인 ‘처벌의 확실하다고, 엄격하다고, 신속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탈락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모두 탈락되었다. 하위 가설인 ‘수치심, 애착손실, 관여손실을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탈락되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모두 탈락되었다. 하위 가설인

‘처벌의 확실하다고, 엄격하다고, 신속하다고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탈락되었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지는 일반인의 보험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일부 채택되었다. 하위 가설인 ‘수치심, 애착손실을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채택되었다. ‘관여손실을 인지할수록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탈락되었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로서 보험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원인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보험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억제이론의 검증설계와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른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한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범죄 조사의 법제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²²⁾되어 있고 보험감독기구에 조사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²³⁾ 보험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

22)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범죄조사자의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가 발생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험범죄 조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범죄 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의 범위를 법규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²⁴⁾

둘째, 보험범죄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등 활성화 필요성 제기이다.

비공식적인 제재로서 수치심, 애착손실, 관여손실과 관련된 홍보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결과 검증되었다. 수치심은 잠재적으로 자기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수치심이 더 많이 인지될수록 보험범죄 발생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며, 애착손실은 사회적 비난인 당혹감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혹감이 클수록 보험범죄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죄책감, 후회, 보험범죄의 처벌로 인한 가족들의 실망 및 주변 사람들의 회피가 강조된 영상 등을 통한 보험범죄의 폐해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보험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언더라이팅(Underwriting)과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강화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²⁵⁾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언더라이팅(Underwriting)²⁶⁾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어떤 요인을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보험회사마다 지향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24) 금융위원회는 입법권이 있으나 보험감독의 실질적인 집행기구는 금융감독원이므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권한을 주어야 공식적 제재로서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 25) 보험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不要式諾成契約)으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따라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26)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실시하여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과정을 말한다.

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인수금지물건을 선별하는 목적은 이들을 집중 관리하는데 둔다. 이들 인수금지물건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범죄 징후를 포착하여 철저한 조사 및 대처를 행함과 동시에 인수금지물건인 경우 언제나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이들이 사전에 보험범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로서는 인수금지라는 언더라이팅 강화행위가 제도적 허점과 집중관리체제의 부재로 보험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수금지물건으로 지정하여 이들 위험을 배척하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이들 위험을 완전히 보험업계에서 배척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있어서 철저한 후속 대책이 없는 언더라이팅 강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한다면 보험범죄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표본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표본이 확률표집방법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둘째,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하다보니 설문조사 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의 부족 및 응답자의 성실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억제이론에 따른다면 처벌의 경험은 향후 범죄를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억제이론을 검증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처벌의 특별억제효과는 검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연구는 보험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재의 효과와 개인적 특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보험범죄의 원인론적 접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최초라는데 의미를 두며, 본 연구에서 다룬 공식적·비공식적 제재의 다양한 하위가설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본 연구외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변수의 추가 연구 및 특별억제이론의 적용 등 다양한 원인론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어 보험범죄예방에 관한 유용한 근거가 다양하게

제기되기를 바란다.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공식적 제재 수단과 비공식적 제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단기적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장남, (2006).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안병재, (2001).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손해보험」, 2000년 10월호, 손해보험협회.
- 연성진·최인섭·정진수·박미숙·신의기·김은경,(2003). “한국의 형사정책 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정은, (2012), “보험사기에 관한 형법적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권, (2010), “보험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실, (2009),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2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우홍, (1985), “지각된 억제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 3(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최인섭·이천현·오경식·안경옥· 이경렬,(2002),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정봉, (2010). “보험학 원론”, 대왕사.
- Cochran, J. K., Chamlin, M. B., Wood, P. B., & Sellers, C. S. (1999). “Shame, embarrassment, and formal sanction threats: Extending the deterrence/rational choice model to academic dishonesty” , Sociological Inquiry, 69(1), 91-105.
- Gibbs, Jack P, (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New York: Elsevier,
- Grasmick, Harold G., and Robert J. Bursik Jr,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837-861.
- _____, (1993). Changes in the sex patterning of perceived threats of sanctions. Law & Soc’y Rev. p.684.
- Larry J. S, (1986). Criminology. St. Paul, MN: Weast Publishing co.

- Meier, Robert F., and Weldon T. Johnson, (1977). "Deterrence as social control: The legal and extralegal production of conform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92-304.
- Nagin, Daniel S., and Greg Pogarsky, (2001). "Integrating Celerity, Impulsivity, and Extralegal Sanction Threats into a Model of Gener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Criminology* 39(4), 865-892.
- Silberman, M. (1976). "Toward a theory of criminal deterrence"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2-461.
- Tittle, C. R. (1969). "Crime rates and legal sanctions" , *Social problems*, 409-423.
- Williams, K. R., & Hawkins, R. (1986). "Perceptual research on general deterrence: A critical review" , *Law and Society Review*, 545-572.
- Zimring, Franklin E., Gordon Hawkins, and James Vorenberg(1973). *Deterrence: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금융감독원, 2012 .3. 12.일 보도자료

<http://www.fss.or.kr>

Abstract

Insurance is widely being used in the capitalist system as a most rational system for responding to risk, South Korea can be said insurance giant because the volume of insurance premium is US \$ 1,595 billion in 2014, which is the 8th scale in the world.

Despite of various advantage of insurance, the adverse effects has emerged because of its speculative nature, which is attractive for criminals. And the damage from speculative nature causes variety anxiety not only to insurance company but also whole policyholders.

Various studies are in progress to prevent such insurance crime, but almost of the previous studies suggest various measures, inclu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th no objective research on the causes associated with the insurance crime.

In this study, I tried the etiological approach as a systematic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insurance crime to prevention and reduction of insurance crim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informal restrictions such as shame and attachment loss are significant rather than Severity, certainty, speed of punishment which is formal restrictions. And we also found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Occupation, place of residence, monthly income, age, marital status are significant.

Through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we can try to establish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various insurance crimes. And I hope more variety of etiological studies will be progressed from now on.

※ Key words :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Conditions of Insurance Crime, Control of Insurance crime